

2018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



병무청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1

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

- 1-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7

- 2-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2-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2-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2-5.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출장·파견은 어떻게 가나요? 15

-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3-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3-3.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4.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21

-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4-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4-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27

- 5-1.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5-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33

- 6-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6-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37

- 7-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7-2. 국외여행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7-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43

- 8-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8-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8-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9.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9

- 9-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9-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53

- 10-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10-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57

- 11-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 11-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이 보류됩니다.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알기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문연구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한 반면, 청년층 증대로 1960년대부터 발생한 병역자원 잉여현상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1973년도에 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1991년에 자연계대학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목적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연구활동의 확대로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01

편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이라 함)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1-1.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 편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
-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교육부 선발전형 합격한 자연계 대학원생이「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된 경우에 한함.(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제외) →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편입



1-2 |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의 연구실)에서 3년간 연구인력 으로 복무

☞ 편입대상자 선발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매년 배정된 인원의 범위 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별도 선발전형(TEPS·출신 대학원 성적, 3급 이상 한국사검정능력시험)으로 선발하여 편입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원은 국비 장학생 등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편입
-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대상자 선발, 수료 후 전문 연구요원 편입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하며 이하 대학원이라 함)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근로시간 중 승인받은 업무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면 편입취소 및 고발되므로 대학원장(지도교수)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대체복무자 신분으로 일반 박사학위과정 학생과 구별됩니다.



- 2-1.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2-2.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3.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2-4.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2-5.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1 |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할 수 있는 일

- 편입 당시 대학원에서 허가된 연구 분야(전공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전직, 파견, 출장, 국외여행 등으로 지정된 연구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승인·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2-2 |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09시까지 해당 대학원의 승인받은 연구실/실험실에 출근하여 18시까지 허가받은 분야에 성실히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18시 이후에 부득이하게 야간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할 경우 1일 8시간의 연구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출근시간 조정 시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함)





2-3 |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 함께 할 수 없는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 등 임원
- 편입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

○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
 - ※ 근로시간 이후라도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은 엄격히 금지됨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



2-4 |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처벌을 받음

〈대학원장의 지시에 이기 부득이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 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연장 복무 경고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연장 복무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연장 복무 경고 시정
3. 겸직금지 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연장 복무 경고
	4. 수학기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경고

* 병역지정업체장 : 자연계대학원장, 과학기술원장

* 편입당시 해당분야 : 박사학위과정 연구분야



2-5 | 대학원장(지도교수)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무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신고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 병무청 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모든 매체 활용 가능



복무위반행위 신고하면 들어가기

병무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ma.go.kr>

▶ 병무인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복무위반행위신고 → 신고하기

- 책임실태조사관 신고조사
 - 보안유지 조사 →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신고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태조사 →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조사 결과처리
 - 실태조사 결과 업체(대학원장)가 고발,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책임이 면해 집니다.





- 의무복무 중 해당 연구분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출장·파견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입니다.
- 출장·파견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및 근무지 등을 포함하는 승인신청서를 관할 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출장·파견근무한 경우에는 연장복무처분 될 수 있으니 대학원에서 출장·파견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03

출장·파견은 어떻게 가나요?



-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3-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3-3.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3-1 출장·파견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국내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월
- 국내 파견근무(출장 포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과 파견근무 : 승인
 -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파견
 - 3월 미만 국내 교육훈련과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 신상변동 통보
 - 대학원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 국내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 기재
 - 대학원장이 복무기록표에만 기재(통보와 같음)

3-2 출장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출장승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의 출장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외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출장이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 등에 수급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 판촉사원 활동





3-3 | 파견승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파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또는 동일법인이나 다른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 및 부소재지의 연구소로의 파견
-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

○ 파견제한 사유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업무처리 사례

사례1)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외 출장(월~수), 사내근무(목), 출장(금~목)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전체 10일간 출장을 간 경우
 → 복무기록표 기재(연속하지 않은 출장임, 3일 출장과 7일 출장을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

사례2)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외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신상변동통보(토·일요일 포함하여 8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무단결근을 제외한 모든 기간계산은 공휴일,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8일간 결근을 한 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 연장하여 종사하여야 하는데 그 연장기간에도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음)

사례3) 주5일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외 월~금 출장 후,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사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 신상변동통보(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 따라서 12일간 출장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이동통보 대상)

04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승인전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전직을 하여야 합니다.
- 당연전직·승인전직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박사만료 후 승인전직은 14일) 이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추가로 연장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4-2.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4-3.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1 |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당연전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 연구 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종사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취소된 경우
- 종사중인 대학원이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승인전직)

-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후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를 옮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승인신청서 : 대학원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 제출
- 준비할 서류
 - 전직 신청서, 채용동의서(1개월 이내 발행) 등 증빙자료

- 대학원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 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전직승인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희망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상호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4-2 |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 다른 업체로 옮기는 대기기간
 -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 연장)
 - ※ 박사수료 사유 승인전직 대기기간은 14일 이내
 - 최초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추가되는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됨
 - 전직대기기간 6개월 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편입취소



4-3 |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및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함에 따라 핵심 연구 과제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로서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05

휴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 1일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계산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내 병가는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해야 합니다.



5-1.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5-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 |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휴가, 병가를 갈 수 있습니다.

○ 휴가

-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함(근로계약서상 휴가를 별도로 규정시 제외)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기간은 연장복무

○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 8시간 적용
- 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 지각, 조퇴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재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 가능

- 지각 · 조퇴 · 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연장복무

○ 병가

- 통틀어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5-2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변경이란?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 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재신체검사 가능함

○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X-ray, CT,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있는 경우

○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처리

- 신체등급 5급 : 편입취소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 신체등급 6급 : 편입취소하고 병역면제 처분
-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근무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 지정병원 조회



06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편입취소 될 수 있습니다.



6-1.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6-2.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1 |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수학할 수 없습니다.

- 수학금지
 -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불가
- 수학금지 위반처벌 : 편입 취소 또는 연장 복무



6-2 |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학금지 예외
 -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을 위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국외여행 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1년이며 3월 이내의 국외여행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07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7-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7-2. 국외여행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7-3.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7-1 |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국외출장 등

○ 허가신청 및 기간

-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 제출(병역지정업체의 장 추천)

- 허가기간 : 모두 합하여 1년

- 의무복무 인정기간 : 모두 합하여 3개월

* '15.7.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15.6.30. 이전 편입자는 종전규정 적용)

7-2 | 국외여행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정범위 : 해당분야 근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 공동연구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연구기관

• 계약형태 : 공동연구 계약/협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공동연구 계약서/협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사본 1부

- 기술연수

• 계약당사자 : 국외 외국기업, 외국 기관

• 계약형태 : 기술도입 계약, 기술협력 협약

•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기술지도

• 계약당사자 : 국외 제품·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된 경우) 사본 1부

○ 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 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부담(개인부담은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소유(개인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계약당사자 : 대학원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 (연구요원과 해외교수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기간 불인정)



7-3 | 국외여행허가 위반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

○ 행정처분 대상

-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경우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 및 고발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병역사항 : 35세(의무사관후보생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 해당분야 : 연구 · 연수 · 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성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물 소유권 :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공동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유효기간 확인
- 협약 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 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공동연구 계약서(건본)

① 연구과제	○○○○○○○
② 연구내용	1.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와 한국○○○은 ○○라는 목적을 위하여 양 연구기관이 공동연수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는 2. 연구프로젝트 기간 연구프로젝트는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 진행한다. 3.
③ 경비부담	미국○○○와 한국○○○ 연구기관은 연구프로젝트와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은 ○○을 부담하고 한국○○○은 ○○을 부담 한다.
④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미국○○○와 한국○○○ 연구기관은 이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 로 한다.
⑤ ○○○연구기관장	(서명), ○○○ 연구기관장 (서명)

※ 계약서 형식은 연구기관별로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복무인정 심사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① ~ ⑤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복무인정 심사가 가능합니다.

08

군사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사교육소집은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 질병,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8-1.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8-2.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8-3.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8-1 |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대상자 선발은 이렇게 합니다.
 - 편입한 후 6개월 이내에
 - 대학원장 또는 의무자의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 희망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
 -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 활용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 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화면)
-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대기 중인 경우(전직대기 전 통지서 받은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가능)
 - 국외근무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중인 경우
- 군사교육소집 제외 및 미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 중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20일) 이상 받은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8-2 |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군사교육소집 선발자 인터넷 예고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산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조회 및 발급 → “산업군사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



- 군사교육소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주요업무 수행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등

8-3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 군사교육소집기간 : 4주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미 교육자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복무만으로 처분을 보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복무만으로 처분)
- 군사교육소집 중에 부대 밖으로 내보내는(퇴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경우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



참고사항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수 있으며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만료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기간 중 입계 된 부상·질병·또는 장애(군인사법에 의한 공상으로 인종된 경우)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09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 부터 포함하며 의무복무 중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연장복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1.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9-2.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9-1 |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포함합니다.

○ 의무복무기간 계산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산입



9-2 |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유

-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함) 또는 정직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모두 합하여 3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 전직대기기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복무토록 결정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기타 결근기간 등

10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10-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10-2.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10-1 |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취소사유

-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에서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수학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박사학위과정의 제적·중도포기 등 과정에서 제외된 경우
- 당연전직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0-2 | 편입이 취소되면 병역의무부과 됩니다.

○ 의무부과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복무단축

- 단축대상 : 편입 취소된 사람
- 단축기간
 -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기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산정한 기간

○ 복무단축 예외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

11

복무만료 후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전문연구요원은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 「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므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예비군 관련방침 상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예비군이 되어 향방훈련을 받게 됩니다.



11-1.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11-2.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이 보류됩니다.



11-1 | 예비군훈련 시간은 이렇습니다.

○ 훈련대상 및 시간

구분		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항방 기본 훈련	항방 직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4시간		12시간 (6H×2)		124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5~6 년차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142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7~8년차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11-2 | 이런 경우 예비군훈련이 보류됩니다.

- **법규보류 대상자** : 국방부장관이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 교육훈련을 보류. (「항도예비군설치법」 제5조)
 - * 주요 법규보류 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
- **후순위대상자** : 지방방무청장은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후순위 승인요청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을 말함.
 - * 후순위조정 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해운업종의 경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필수요원 등





| 산업지원업무 상담 전화번호 |

청별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35208	042)481-2813 2818	042)481-2819
서 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07360	02)820-4492~4 4496	02)820-4151
부 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38 5259,5255,5257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81~5 6256	053)607-6250
경 인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81~6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61489	062)230-4253~4 4354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3~4, 4453, 4256	042)250-4127
강 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033)240-6260
충 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 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250
경 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51439	055)279-9254~6	055)279-9387
제 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5	064)720-3260
인 천 병 무 지 청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1~5	032)454-2250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31)870-0358
강 원 영 동 병 무 지 청	강원 강릉 울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병무민원 전화 서비스 : 1588-9090

병무민원 인터넷 서비스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 사이트 : <http://work.mma.go.kr>
(복무관리포털 및 구인구직 시스템)

